

대구광역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6. 4. 3(수)

사회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나. 제출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가. 제출일자 : 1996. 3. 21

다. 회부일자 : 1996. 3. 22

라. 상정 및 의결

- 제4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상정 : 1996. 4. 1
 -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의결 : 1996. 4. 1

2. 제안설명요지(설명자 :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가. 제안사유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을 발생원에 따라 분류하여 원인자 및 발생지,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완전자립이 될 때 까지 쓰레기 봉투 값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나.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95.8.4 법률 제4970호), 동법시행령(96.1.19 대통령령 제14897호), 동법시행규칙(96.2.5 환경부령 제18호)
- 지방자치법 제95조

다. 주요골자

- 일반폐기물을 가정생활 쓰레기와 사업장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분류(안, 제2조)
- 대형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화되어 품목을 확대 지정하였으며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이 환경부의 지정에 따라 품목이 확대되므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음.(안, 제2조, 제4호, 제5호, 제5조)
- 쓰레기 처리비의 자립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쓰레기 봉투에 상업용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3항)
-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에 따른 비용을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완전자립이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토록 하였으며,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이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이 고시하도록 하였음.(안, 제18조 「별표 4」)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전문위원 : 백창기)

-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규 개정으로 인한 용어 변경과 업무추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쓰레기 봉투면에 상업용 광고를 게재토록 하여 쓰레기 처리비용 적자폭 감소에 다소나마 기여하고
-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불법봉투 유통방지를 위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으며, 날로 다양화 되어가는 대형폐기물 품목을 확대, 지정하여 대형폐기물 처리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에 따른 비용을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2001년까지는 쓰레기 처리 비용 자립도를 100% 실행토록 하고
- 골목길 통·반 단위로 환경청결의 날을 지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개정 이오나 여러위원님께서 심도있는 토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답변자 :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질의요지	답변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조례(안) 제10조 제2항 「별표2」의 쓰레기 봉투판매소 표지판에 달서자치구 글자표기는 대통령령 제12367호('87.12.31 공포) 구설치와 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구 명칭이 달서구로 신설된 후 구명칭 변경이 없었으며 달서구와 달서자치구의 명칭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명칭표시는 달서구로 변경코자 하며 그리고 달서자치구를 고집하는 사유와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p>○ 1988. 1. 1에 대통령령으로 달서구로 신설되었으나 1988. 5. 1이후 지방자치법에 자치구 문안이 있으며 그리고 일반시의 구와 광역시의 자치구와 구별하고 주민들에게 자치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자치구를 표기하게 되었으며 달서자치구의 명칭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가구가 많은데 봉투가격을 대안없이 인상시키면 오히려 규격봉투 사용률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 대책은? 	<p>○ 현재는 공휴일과 일요일에도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있어 환경미화원의 일손이 모자라 불법배출 단속이 어려운데 96년 5월 1일부터는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수거하지 않고 휴무케 하고 월~토요일까지만 근무케 하여 남은 인력 2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력히 단속하겠으며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투가격이 인상된다면 규격봉투 유사품의 유통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p>○ 달서구관내 2개업체에서 제작하고 있으며 제작시 입회하고 제작후 동관을 회수해 오고 있고 계속해서 업체와 구청과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작업체에서 불법제작하는 경우는 없다고 사료되며 우리구 관내 봉투 판매소가 1,080여소에 이르러 불법제작봉투 유통시 정보가 포착될 것으로 사료됨.</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불법유통 신고센타 설치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용의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불법봉투 투기 및 불법유통 신고센타는 구청과 동사무소에 설치하였으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제는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쓰레기 봉투판매소 표지판에 대통령령 제12367호('87. 12. 31 공포)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3항 등에 규정된 우리구 공식명칭인 달서구로 표기하지 않고 달서자치구로 표기하는 것은 법적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는바 공식명칭인 달서구로 수정을 요함(반대없음)
- 쓰레기 봉투가격이 인상되면 쓰레기 불법 투기자 신고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봉투가격 인상 필요성 및 당위성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강화토록 촉구하였음.



6. 수정안 요지

제안일자 및 제안자	수 정 이 유	수정 수요 골자
'96. 4. 1 최종백의원	○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에 우리구 명칭이 달서자치구로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령 제12367호('87. 12. 31 공포)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1」, 내무부 지방행정구역 요람등에 규정된 우리구 공식명칭인 달서구로 표기하므로써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주민혼란을 방지코자 함.	○ 개안조례(안) 제10조 제2항 「별표2」의 쓰레기 봉투 판매소 표지판상의 "달서자치구"를 "달서구"로 수정

○ 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반대없음)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 조례개정조례(안) 제10조 제2항 「별표 2」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p>	<p>○ 조례개정조례(안) 제10조 제2항 「별표 2」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p>
<p>쓰레기 봉투판매소</p>	<p>쓰레기 봉투판매소</p>
	
<p>달서자치구</p>	<p>달 서 구</p>